
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삼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60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26.

발의자 : 김삼화 · 주승용 · 김관영
신창현 · 신용현 · 김동철
송옥주 · 김중로 · 이정미
김수민 · 이용주 · 손금주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가行광산 · 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 또는 토양오염의 개량사업,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광해방지사업자가 가行광산 ·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·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·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,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토지 등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

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항).
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가행광산·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, “수용 또는”을 “수용(제1호에만 적용한다)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가행광산·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토양오염의 개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